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 주 군 수

2. 개정이유

○ 성주군시설관리사업소 신설 승인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(안 제4조)

현 행	담 당 사 무	⇒	이 관
새마을체육과	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		성주군시설관리사업소

○ 시설관리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(안 제11조, 안 별표2)

사업소명	위 치
성주군시설관리사업소	성주군 성주읍 참별로 2530-1

○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 (안 제13조)

- 관리대상 시설물
 - ·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
 - · 성주성산동 고분군전시관
 - · 성주국민체육센터
 - · 벽진생활체육공원
 - · 성주별고을운동장
 - · 낙강선유이야기공원
 - · 성주실내체육관
 - · 선남생활체육공원
 - · 선남면강변야구장
 - · 공공체육시설(체육관)
- 소관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
- 소관시설물의 프로그램 개발운영·개발 및 유지관리
- 성주별고을체육공원 및 그 밖의 관리대상에 관한 업무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 제8조, 제9조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2018. 1. 4 ~ 2018. 1. 24)
○ 규제심사 : 기획감사실 협의
○ 성별영향평가 : 제외대상 ※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7년 11월 29일, 경상북도로부터 성주군시설관리사업소 신설을 승인받음에 따라 분장사무 조정을 통해 군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
○ 새마을체육과 분장사무 중 “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사무”를 성주군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고 시설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, 관리대상시설 및 소관사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.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